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가단53031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조세형, 유태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11. 3.

판 결 선 고 2021.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2. 27. 체결된 매매계약은 13,79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8. 12. 18. D과 사이에 D의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대출금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8. 12. 18.부터 2028. 12. 1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2019. 4. 18.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지급이 연체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8. 21. E은행에 보험금 49,047,749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D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9차전444482), 위 법원은 'D은 원고에게 49,289,628원 그 중 49,047,749원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2019. 12. 21.까지 연 8.6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20. 1. 4.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D은 2018. 12. 27.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D의 재산상태

D은 이 사건 자동차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8. 21.경 E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2019. 4. 18.로부터 5개월 전이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0일 후인 2018. 12. 2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후 실제로 원고가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D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D은 적어도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F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것일 뿐 D은 알지도 못하였고, 더구나 D이 채무초과상태라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D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 C이 알고 지내던 F가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준다는 말을 하여 친척들로부터 빌린 돈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18. 12. 10. G(피고 배우자의 형제의 남편임)의 예금계좌에서 30,000,000원이 출금되었고, 2018. 12. 11. H(피고의 아버지임)의 예금계좌에서 5,000,000원이 출금된 사실, ② 피고는 F에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는데, 소유권이 자신이 모르는 사람(D)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따졌고, F가 취득등록세 절감을 위해서 몇일 동안만 공동명의로라고 하여, 피고의 남편 C이 F를 직접 만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2. 19. D과 피고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가 같은 달 27. D의 1/2지분이 피고의 소유로 이전등록된 사실, ③ 피고가 중고자동차거래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와 D이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④ D은 2018. 12.경 당시 남자친구였던 소외 F가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한달안에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D의 신분증을 가져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 대출금 외에도 신용대출금 등 모두를 F가 가져갔고, F가 모든 일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피고나 C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D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주

자동차 목록

차 명 E220 d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천안시

제원관리번호 0082-00051-0000-1216

연 식 2017년식

차 종 승용 중형

차대번호 끝.

